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소병훈·박희승·박상혁
이개호·강준현·권칠승
박 정·김 윤·김원이
이성윤·조계원·허 영
용혜인·강득구·어기구
이수진·김주영·부승찬
이주희·강경숙·안태준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.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(안 제4조제2항)

나.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5조제4항 신설)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발굴하여”를 “발굴하고,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 및”을 “제1항,”으로, “신청 시”를 “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까지”를 “제6항까지”로, “지원”을 “지원, 신청 간주”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
2.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,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

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원칙) ① (생략)</p> <p>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<u>발굴하여</u>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5조(사회보장급여의 신청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기본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발굴하고,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사회보장급여의 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</u></p> <p>2. <u>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</u></p>

<p>④ (생 략)</p> <p>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신청 시</u>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⑥ 제1항부터 <u>제5항까지</u>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, 신청 <u>지원</u>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권자로 확인되면,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----- 제1항, -----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제6항까지 ----- ----- <u>지</u>원, <u>신청 간주</u> ----- ----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